

“내가 지킨 정보보안 신뢰받는 서울메트로!”



서울메트로



수신자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자전거 경사로 설치·운영관련 관련법 개정 알림

1. 행정자치부 생활공간정책과-631호(2017.2.16.) 「자전거 이용시설 구조·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」 개정 알림과 관련입니다.
2. 위 호와 관련하여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확보와 자전거 이용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「자전거 이용시설 구조·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」 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자전거 경사로 설치·운영 시 반영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자전거 경사로 설치기준 주요 개정사항

- 자전거 경사로 설치 최소간격 축소(0.35m → 0.2m)

※ 경사로 설치간격이 0.2m인 경우 자전거를 약 9도 기울이면 벽면과 자전거 핸들이 닿지 않음

구분	현행	개정	경사로 단면도	비고
자전거 경사로 설치 간격(W ₁)	35cm 이상	20cm 이상		
자전거 경사로 설치 폭(W ₂)	15cm 이상	15cm 이상 (홈의 경우 9cm)		

- 점자블록 설치 및 경사로 돌출부 마감 등 안전기준 신설

【현 행】



【개 선】



- 엘리베이터 등 자전거 경사로 외에 자전거를 이동시킬 수 있는 수단이 설치된 경우 자전거 경사로 설치 예외 규정 신설

※ 부산·대구·대전 지하철은 자전거 이용자의 엘리베이터(E/L) 사용을 허용

